

【 14 】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5. 30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본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42명이 '97. 1.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에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 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과 관장업무, 직원들의 직급과 정원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농촌지도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도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과 관장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지도소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지도소 위치는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27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 경영개선 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동경기, 일류한국

##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권선·매산로3가1 / ☎(033) 249-4094 / FAX 249-2228 담당 일명록

문서번호 자치 12200 - 686

시행일자 1997. 3. 1. (년)

(경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선 결	파 장	S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7. 3. 1 I.	결
수 번 호		4284/1st	재 체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표준(안) 시달

농촌진흥조직의 지방직 전환 ('97. 1. 1)에 따른 농촌지도소설치조례및운영조례 표준(안)을 복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t; 유의사항 &gt;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준수

- 지도소장 및 과장 · 담당관 직급 (별표 3)
  - 지도소장 :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 과장 · 담당관 :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 ○ 기구의 설치

- 조례 : 지도소 및 지소설치에 관한 사항
- 규칙 : 지도소 하부조직(상담소 포함)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덧붙임 :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자치 12200 경기장 전결



받는곳 : 러

## ○○○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지도소 위치는 경기도 . . . . . 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찰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①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군수)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찰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지소설치)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소장 밑에 ○○지소를 둔다.

제6조(공무원)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1997년 2월 4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김우석  
내무부장관

① 대통령령 제15,267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법 제104조"로 하고, 동조제6호중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법 제105조"로 하되, 동조제7호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법 제106조"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시·도 및 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한다.

"3조 다음의 "제2장 시·도의 기구"를 삭제한다.

제4조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회의회의 설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 하는 아니된다.

제5조제2항중 "본부"를 "본부(본부는 시·도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보조기관"을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는 "부득이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있어야 한다.

제6조 다음에 "제2장 시·도의 기구"를 추가한다.

제9조중 "파"를 "시·도 본청에 두는 파"로 한다.

제3장의 제목을 "시·군·자치구의 기구"를 "시·군·구의 기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526호

(2)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 규칙으로 시·군·구 본청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5개이내의 실·과·담당관으로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기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 정수범위안에서 실·국과 그 하부조직인 실(실장이과장급인 경우에 한한다)·과·담당관(담당관이과장급인 경우에 한한다)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본청 실·과 및 실·과·담당관을 설치기준의 범위내에서 중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예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민활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통필수기구의 실·국 및 실·과·담당

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인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기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의 제목 "직속기관"을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광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1조제2항중 "농촌지도사업"을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회자부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농촌진흥원에 지도국·시험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과장, 농촌지도  
소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  
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행의시장  
·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⑦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헌의요청을 받은 내무부장관은 지역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지방공립대학등) ①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대학 및 전  
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작과 문장사무는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  
과 사무처 또는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사무국(인천전문대학에 한한  
다)·교무과·학생과 및 서무과 등을 둘 수 있다.
- ③ 대학의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일반적 3급지방공무원으로, 과  
장은 일반적 5급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사무처장의 차장등은 교

수 또는 부교수로 진보한다.

-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적 4급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적 5급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서무과장의 차장은 교수·부교  
수 또는 조교수로 진보한다.

- ⑤ 대학 및 전문대학의 공립대학(기능대학)에 의한 기능대학등록  
포함한다)의 기구 및 직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당해 공립대학의 하  
교수·학생수·학력인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지방공립대학의 직원을 책정하고  
자 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  
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교수
2. 부교수 및 조교수

3. 전임강사

제12조제2항중 "교수부와 과를 두며"를 "부와 과를 둘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장"을 "과장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사업소 및 출장소) ①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작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문장사무에 관하여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3)특별시, 광역시, 광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 구역안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2항 중 "총정원"을 "표준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중 "산정한 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를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한 경우에는"을 "표준정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인력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고 보안사항등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여 이 하며, 그 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야 한다"를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개시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상당계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장직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친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을 “한시정원을”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시기구에 대하여는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있다.

⑥한시정원의 존속기한과 그 장수는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적급별 정원은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진급이 있을 때에는 그 직급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 개청할 수 있다.

⑧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를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조직운영진단)”을 “(조직진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조직진단”을 “정기적인 조직진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폐지나 축소등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구감소등으로 행정수요가 조직설치 당시에 현저히 감소된 경우
2. 출장소·사업소등이 철거당시의 설치목적과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비령상의 신지요건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조직관리지침의 시됨) 내무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관행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청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과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명령과 그 지침과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교 : 본령이 전·국·본부·민·관·담당관의 수를 관할원에 있어

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자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지방기자단체에 설치된 기구와 책정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학장법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등 합리적인 조치운영을 위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조직개편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로 전환하거나 폐지 하여야 한다.

제3조(시·군·구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군·구에 설치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에 의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행정인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3]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등의 직급기준

### 1. 분정(제8조전원)

구 분	기회관리 실 장	실·국·장	과 장	담당관	소 방	본 부
		본부장	소방당 과 장		방	방
서 울 특별시	1급일반직 국가공무원	2-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 방 정	지 방 방
부 산 광역시	2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 방 정	지 방 방
대 구 · 인 천 · 평 주 · 대 전 광 역 시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 방 방
도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 방 방

### 비고

1. 실·국장중 감사실장(1명) 및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1명)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제주도를 제외한다)(1명)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서울특별시와 도에 한한다)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제주도에 한한다)(1명)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과장중 기회관(1명)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비상내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1명)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1명)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인거된 직위중 그와 가장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실장중 서울특별시의 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에 한하여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담당관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도는 4급 일반직지

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빙장직의 복수자를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직속기관

###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1조제8항관련)

농 촌 진 흥 원				농 촌 지 도 소		
원 장	국 장	과 장		시 험 장 장	소 장	과 장 · 담 당 관
		지 도 사 업 분	시 험 인 구 사 업 분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또는 연구관	농업 연구관	농업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도관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도관
		생활지도관				

### ○ 지방공무원교육원(제12조제3항관련)

기 관 명	원 장	부 장	과 장 · 교 관
특별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광역시·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 시·도별로 국가시책 교육과의 인개를 위하여 과장(1명) 또는 교관(1명)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과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 ○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인구10만 미만	19개이내
	인구10만 미만(도농복합형태의 시)	3실·국이내 20개이내
	인구10만이상 20만미만	3실·국이내 20개이내
	인구20만이상 30만미만	5실·국이내 24개이내
	인구30만이상 50만미만	6실·국이내 25개이내
	인구50만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실·국이내 28개이내
	인구50만이상 70만미만(구를 설치한 시)	5실·국이내 21개이내
	인구70만이상(구를 설치한 시)	6실·국이내 24개이내
	특별시의 자치구	6실·국이내 27개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4실·국이내 18개이내
군	인구 15만이상	19개이내
	인구 5만이상 15만미만	15개이내
	인구 5만미만	13개이내

비고 : 본창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 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 관련)

구 分	4급	5급	6급
시·군·구	· 국장 또는 과장급 실장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부구청장	과장·담당관 또는 과장급 실장	계장
유·민·동		· 유·민·동장 · 인구 1만이상 읍의 부읍장	· 인구3만이상 읍 의 과장 · 유·민의 계장 · 동의 사무장

비고 : 과장급 실장중 군 및 시(국이 없는 시에 한한다)의 기획·간 사업부를 담당하는 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별표5]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0조의3제1항관련)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 치 대 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도
의회사무국	자치구 및 국이 설치된 시
의회사무과	군 및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

○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 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과장또는담당관
서 울 특별시	1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부 산 광역시	2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기 타 광 시 · 도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6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개급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의行政機構와定員基準등에관한規程

改正理由

地方自治團體의 競爭力を 강화하기 위하여 市·郡·自治區  
와 國會事務機構·公立大學·事業所·山脈所등 組織의 설치  
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國家公務員의 地方職 轉換에 따라 관  
련된 사항을 정비하며, 그밖에 본격적인 地方自治 실시 이후 地  
方自治團體의 組織運營過程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1997年 1月 1日부터 地方公立大學의 教授등 教員의 身分이  
地方公務員으로 변경됨에 따라 公立大學의 組織設置基準과 下部  
組織인 處長·局長·課長등의 級級基準을 정함(令 第11條의2).
- 나. 地方自治團體의 人力을 개회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도록 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5個年 中期基本人  
力運用計劃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14條의2).
- 다. 地方自治團體의 長보에 빛는 組織을 유지하고, 地方自治團體간  
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市·郡·自治區의 室·局 및 課·檣  
當官의 설치기준과 國會事務機構의 설치기준등을 정함(令 別  
表 4 및 別表 5).

<법제처 제공>